

2006년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가족제품에 다양한 컬러와 무늬를 표현하는 기술이 세종대왕상 수상



특허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2006년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이 지난 7월 14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허기술상은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발명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범국민적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수상 기술은 특허청 심사관의 추천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협의회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 분기별로 우수 특허 3건과 디자인 1건이 선정된다.

특히, 금번에는 대기업 기술이 주로 선정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최고상인 세종대왕상은 개인 발명가가, 3위 지식영상과 디자

인분야 정약용상은 중소기업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어,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가의 기술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부문 영예인 세종대왕상(1위)은 「염료의 번짐이 없는 폴리우레탄 인조가죽 및 그것의 전사나염 방법」을 발명한 이진섭 발명자, 충무공상(2위)은 「이기종 프로토콜간 상호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공통 프로토콜 계층구조 및 방법과 공통 프로토콜 패킷」을 발명한 최광순 발명자 외 3명, 지식영상(3위)은 「냉간압조 특성이 우수한 소입소려 열처리 강선」을 발명한 안순태 발명자, 그리고 디자인부문 정약용상은 「전기발효기」를 출품한 (주)엔유씨전자의 김중부 창작자가 수상하였다.

특허청이 상표 출원을 한다며?

혁신 브랜드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특허출원시스템」에 대한 혁신 브랜드인 “특허路”를 상표(업무표장) 출원한다.

지금까지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기관 홍보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를 간혹 상표로 출원한 경우는 있었으나, 특허청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에서는 강력한 브랜드의 육성 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브랜드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떠오른 지 오래며, 최근에는 정부 기관도 행정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혁신 브랜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5월 1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혁신 브랜드 관리 경영을 선포한 바 있으며, 직원들의 내부 공모를 통해 “특허路”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 브랜드의 법적 보호를 위해 상표 출원을 하게 된 것이다.

“특허路” 브랜드로 대표되는 온라인특허출원시스템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100% 전산화한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05년도 한해에만 4,156억 원의 민원 및 행정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대만, 브라질, 인도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특허路”는 이러한 특허행정 혁신 성과를 브랜드화한 것으로 개개인의 아이디어

를 특허로 인도해 주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친근한 길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청은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 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브랜드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미생물 보관관리 강화방안 마련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보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착실히 시행키로 하였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이 부각되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생명공학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생명공학분야 국내특허출원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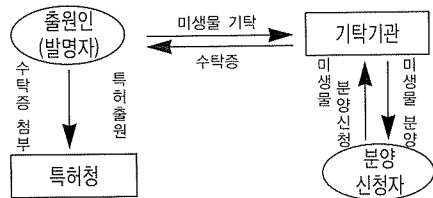
국내출원 총건수	'99	'05 ('99대비)
	1,824 건	⇒ 3,019 건(1.7배)
내국인 출원건수	998 건	⇒ 1,817 건(1.8배)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 연구실에서의 세포주 오염 사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에서 실험용 원숭이가 폐죽음을 당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동물실험연구에 차질을 초래했던 정전 피해 사례 등은 생물자원의 안전보관이 생물자원의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생명공학산업과 관련하여 특허법에서는 미생물 기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생물은 생명체이어서 이에 대한 발명은 해당 미생물의 제조방법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한다 하여도 제3자가 반복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미생물 기탁제도는

미생물의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특허출원대상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고, 특허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생물 기탁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개의 기탁기관에서 특허미생물을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유사시(정전, 화재, 오염 및 테러 등)에 대비한 백업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사시 특허미생물의 사멸로 특허제도의 근간인 발명의 완성 입증 및 제3자에 의한 용이 실시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금번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특허청고시 제2006-9호, 2006. 7. 1.시행)하여 특허미생물의 복제본을 일정요건의 별도 보관시설(백업시스템)에 보관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별도 보관시설(백업 시스템)의 개요〉

특허분쟁 중소기업에 법률구조지원 확대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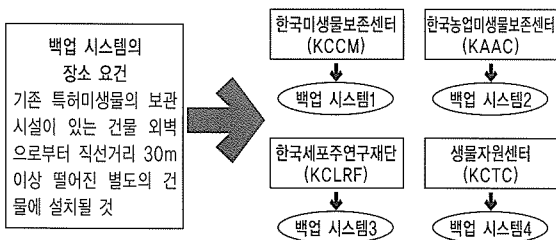
특허청은 지난 6월20일부터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등 산

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업 포함)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종래 특허미생물의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최소 30년, 최근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을 명시하였고, 보관기간 만료 후 특허미생물의 처분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미생물의 백업보관을 통하여 정진, 화재, 오염 및 테러 등의 유사시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층 더 안전성이 강화된 특허미생물 보관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미생물, 동·식물, 유전체 등의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의 기초가 되는 생물자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허료 납부제도 개선

연차등록료 납부 One-Stop 서비스 제공

앞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자는 연차등록료 납부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해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등록료의 납부방법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연차등록료 납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고객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소멸예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통지를 받은 권리자가 특허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권리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자에게 납부기간의 예고통지와 함께 지로납부서를 발부하는 「연차등록료 납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권리자가 지로납부서를 받기 위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홍규 특허청 고객센터본부 등록서비스팀장은 「연차등록료 지로납부 One-Stop 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탈바꿈한 만큼 앞으로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차등록료 지로납부 One-Stop 서비스」는 특허청의 의무고지사항이 아닌,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인 만큼, 등록원부상의 권리자 주소 불일치로 우편물을 수령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특허청에 주소 변경(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소송 사례에서 배우는 중소기업, 개인출원인의 출원전략

최 근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와 국내 제약사간의 특허분쟁, 한·미·일간 반도체 특허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보듯,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허청에서는 우수한 기술이 작은 실수로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를 발표하였다.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는 특허소송 등에서 접하기 쉬운 특허출원의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려서 10가지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특허출원 경험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우수한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사·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그 동안 특허분쟁의 경험으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의 경우 특허출원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금이나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이 복잡한 지재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지재권을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효과적인 특허를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발표한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는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지재권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작은 실수로 사장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우리 발명자들에게 특허출원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

- (1) 제품 출시/논문 발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
- (2)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
- (3)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
- (4) 공동발명, 출원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 (5) 출원명세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라.
- (6)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 (7)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하려면 외국에도 출원하라.
- (8) 해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 (9)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라.
- (10) 특허출원시 상표출원도 함께 고려